

# 촬영 장소 제공을 위한 협정서

20 . . .

(제작사명 기입)

---

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(이하 ‘공원’이라 한다)와 \_\_\_\_\_(이하 ‘제작사’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‘제작사’가 기획하고 있는 뉴스, 드라마, 영화, 홍보 등 영상 또는 촬영물 등의 제작을 위해 ‘공원’ 내 장소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한다.

## 제 1 조 목적

본 협정은 ‘제작사’가 제작하는 \_\_\_\_\_(이하 ‘프로그램’이라 한다) 중 특정 부분을 ‘공원’내에서 촬영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‘제작사’는 ‘공원’의 목적 및 운영에 상반되는 내용은 촬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‘공원’은 ‘공원’내 상호 사전 합의된 특정 장소에서의 ‘프로그램’ 촬영을 허락하고 이와 관련한 ‘공원’과 ‘제작사’ 사이의 권리·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.

## 제 2 조 촬영 시점·장소 및 재촬영

가. ‘제작사’의 촬영 시점 및 장소 등은 ‘공원’과 ‘제작사’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‘공원’은 특정 시점 및 장소에서의 촬영을 거절할 수 있다.

나. 추가 촬영을 원할 경우 협정을 다시 체결한다.

## 제 3 조 상호의무

가. ‘제작사’는 ‘프로그램’에 활용된 ‘공원’ 촬영 부분을 표준 파일 형식(mp4, wmv, jpg)으로 방송 전 또는 방송 후 7일 내 ‘공원’에 제공하기로 한다. 만약 파일 제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‘제작사’는 ‘공원’이 인터넷 등에 언급된 관련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.

나. ‘공원’은 ‘가’항에 규정된 ‘프로그램’ 영상이나 장면을 홈페이지, 블로그, SNS, 홍보물 등 제한된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‘공원’은 반드시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‘공원’에서 촬영된 ‘프로그램’의 일부분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촬영 장소 제공 이외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명시적, 암묵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.

다. ‘제작사’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‘공원’을 훼손 또는 왜곡하거나 살인, 방화, 폭력 등의 비도덕적 내용은 촬영할 수 없다.
- ② ‘공원’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이나 시설은 반입할 수 없다.
- ③ 촬영 장소에 안치 또는 성묘가 있는 경우 방문객이 우선된다.
- ④ 촬영을 위하여 ‘공원’에 머무르는 동안 촬영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‘공원’의 회원, 방문객, 직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- ⑤ 촬영 및 편집 시 묘지가 특정되거나 방문객, 고인명, 차량번호 등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벌초, 낙엽제거, 공사 등의 현장 작업이 있는 경우 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.
- ⑦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(담배꽁초, 화기사용 등)를 하지 않는다.
- ⑧ 조경용 수목이나 꽃을 소품으로 활용하지 않는다.
- ⑨ 공원 내 주차 및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

- ⑩ ‘제작사’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‘공원’은 ‘제작사’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촬영을 중지하고 철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⑪ 촬영장소는 완벽하게 정리하고 철수한다.

라. ‘제작사’가 상기 제3조 ‘라’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‘공원’ 및 ‘공원’의 회원, 방문객과 ‘제작사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률적·경제적 책임은 ‘제작사’가 부담한다.

#### 제 4 조 원상 복구 및 배상책임 면책

‘제작사’가 촬영 중 ‘공원’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, 기물,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‘제작사’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. ‘공원’은 ‘제작사’가 촬영을 위해 ‘공원’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.

#### 제 5 조 기타

본 협정서 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정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 6조 협의 및 관할법원

본 협정으로 인한 분쟁은 ‘공원’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위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‘공원’과 ‘제작사’는 본 협정서에 각각 기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※ 제출서류 : ‘제작사’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, ‘제작사’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※ 방송일 : 년 월 일 (미정일 경우 확정시 통보)

20 년 월 일

공원

제작사

(대표이사/대표자 인감)